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양섭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16일

3. 제안이유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나. 빅데이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빅데이터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전부개정됨⁵⁾

5) 2018년 4월,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2021년 7월, 빅데이
터 산업 관련 사업 추진 및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 등 충북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였음

- 조례 시행과정에서 식별된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 제도적인 오류를 개선하여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빅데이터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데이터 관련 분야의 심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여 같은 조의 ‘데이터 산업’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는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제1항은 이 조례의 근거법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과 계획수립 주기를 일치시켜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함
 - 안 제7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의 심의·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 설치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 안 제8조는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신설한 것으로 입법의 기술적 오류⁶⁾를 개선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는 안 제8조에서 위원회가 2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기준도 강화함

구분	현행	개정안
위원장	과학인재국장	경제부지사
구성인원	11명 이내	15명 이내
위원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데이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간사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	데이터 업무담당 과장

- 그 밖에 잘못 사용된 약어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규칙(안 제 15조) 및 위원회 존속 기한(안 제16조) 등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음
- 담당 부서인 과학인재국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음

6)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양섭 의원은 지난 11월 2023년 과학인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기술적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다. 종합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으로 빅데이터 관련 시책 마련의 근거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타당성) 빅데이터위원회가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2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구성인원 등을 확대한 것은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추진계획의 조속한 수립, 위원회 위원의 추가 위촉, 위원회 개최 등 데이터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